

경남 꿈디딤(취업준비지원금) 지원사업 카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서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과 NH농협은행 경남본부(이하 “농협은행”)은 「경남 꿈디딤(취업준비지원금) 지원사업(꿈디딤 카드)」과 관련하여, 기존 선불카드를 체크카드 형태의 바우처 카드로 전환함에 따라 카드 발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경남 꿈디딤(취업준비 지원금) 지원 사업(꿈디딤 카드)’ (이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꿈디딤 카드’ 및 카드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취업준비지원금’이란 직업계고 및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 위탁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 ② ‘대상자’란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 ③ ‘경상남도교육청 꿈디딤 카드’ (이하 “카드”)란 농협은행이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을 위한 ‘카드’를 말한다.

④ ‘경상남도교육청 꿈디딤 카드 관리시스템’ (이하 “시스템”)이란 카드 운영 사업을 위해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농협은행’이 개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⑤ ‘사용처’란 바우처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말한다.

제3조(효력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202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가 별도의 서면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협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매년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협약사무) ‘교육청’과 ‘농협은행’의 협약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카드’ 발급대상자 및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총괄 관리
2. ‘카드’ 및 ‘시스템’에 대한 총괄 관리
3. 바우처 포인트 예산 관리 및 사용 금액에 대한 대금 지급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카드’의 제작 및 공급
2.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3.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4. ‘카드’ 사용 가맹점에 대한 관리
5. ‘카드’ 사용내역 및 등록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
6.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카드’를 활용한 금융 및 경제 관련 교육지원
7. 기타 카드 사업 운영과 관련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

제5조(‘농협은행’ 업무의 세부사항) ‘농협은행’ 업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카드’의 상품명은 ‘경상남도교육청 꿈디딤 카드’로 하며 세부 내용은 ‘농협은행’ 이용 약관을 따른다.
- ② ‘농협은행’은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농협은행’의 기존 카드와 다른 별도로 디자인(교육청 로고 및 명칭 등)된 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카드’의 제작·발급 및 ‘시스템’의 개발·운영·유지보수 등은 ‘농협은행’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④ ‘카드’ 이용 관련 불편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급방법과 사용) 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교육비는 지급 대상자 소유의 ‘카드’에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한다.

- ② 바우처포인트의 지급대상, 사용기간, 사용 가맹점은 교육청이 정한다.

제7조(카드 및 바우처포인트 기능) ① ‘카드’ 및 바우처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다.

1. 바우처포인트의 사용지역 제한(경상남도 내 사용)
2. 바우처포인트의 사용가맹점 제한(문구점, 서점, 기술·가정계 학원 등에 한해 사용)
3. 바우처포인트의 사용기한은 바우처포인트 지급 익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이월 불가)
4. ‘대상자’에게 바우처포인트 잔액환불 불가
5. ‘카드’에 IC칩 내장

② ‘카드’의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미사용 포인트의 소멸) 사용 기능 기간 이후 잔존한 포인트(이하 “미사용 포인트”)는 환급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에 대하여 ‘농협은행’은 권리를 주장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다.

제9조(카드 사용 정산) ① ‘농협은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대상자’의 바우처포인트 잔액을 집계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정산하여 ‘교육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종료일 후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지원 대상자의 ‘카드’ 최종 사용내역을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후 미사용액 발생 시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처리 및 관리) ‘농협은행’은 ‘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교육청’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협조한다.

제11조(카드의 지식재산권) ① ‘카드’의 디자인, ‘시스템’과 관련된 저작권은 ‘농협은행’에 귀속된다. 다만, 교육청이 제공한 로고, 명칭 또는 ‘카드’의 디자인, ‘시스템’을 이 협약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농협은행’은 ‘카드’와 ‘시스템’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농협은행’이 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드’ 또는 ‘시스템’에 교육청을 나타내는 디자인 또는 명칭이 사용된 경우, 이 협약이 해제·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는 ‘농협은행’은 교육청의 명칭 및 로고가 포함된 디자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종료 이전에 이미 대상자에게 발급된 카드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가맹점 수수료) ‘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기준으로 ‘농협은행’에서 책정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따른다.

제13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시스템’은 상호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협은행’의 책임으로 개발한다.

② ‘교육청’은 ‘시스템’에 대하여 ‘농협은행’과 동일한 접근 권한을 가지며, ‘카드’ 사용 관련 통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③ 양 당사자는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카드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제공 및 관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협약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유지) 양 당사자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 및 업무상 비밀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협약 종료 후에도 이 의무는 유효하다.

제16조(손해배상책임 등) 본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보상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승계)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협약당사자의 경영권이 다른 자에게 승계된 경우 본 협약 상의 권리·의무는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승계한다.

제18조(협약의 개정 및 해지) ① ‘교육청’ 또는 ‘농협은행’은 협약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은 협약 종료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농협은행’이 관계 법령 또는 협약을 위반하고, ‘교육청’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농협은행’의 부도 발생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
3. 공익상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9조(양도금지) 당사자 간 서면 합의 없이는 본 협약을 통해 발생된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조례 등 자치법규 포함) 또는 관련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의 당사자간의 문제에 관한 법정 분쟁의 1심 관할 법원은 '교육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기타 특약사항) 본 협약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 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안별로 별도 계약서나 추가 협약서 및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22조(성실이행의 원칙)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상호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 협약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클린계약) ① 협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인지한 일방이 협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도 위반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등)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본 협약 종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5조(자료 요청) ‘교육청’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농협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농협은행’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업무처리)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처리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그 협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비용부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업무협력을 위해 드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운영) 본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연락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 기관의 대표자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6월 10일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조 청 래

